



기독교 교회 연금 기금(사도 교회, “DCRA”)의 확정기여형 은퇴 계좌에서 운용하는 전통적 IRA 또는 Roth IRA를 개설하려면 본 *IRA 가입 양식*(*IRA Enrollment Form*)을 작성하십시오. 전통적 IRA 또는 Roth IRA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가 고용주(Employer)의 현직 또는 전직 고용인(Employee)으로, DCRA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입니다.
- (2) 귀하가 위 제(1)항에서 설명하는 개인의 배우자로서, 현직 또는 전직 고용인과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 (3) 위 제(1)항에서 설명하는 사망한 개인의 생존 배우자인 경우 및 DCRA에 따라 현직 또는 전직 고용인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단, DCRA로부터 적격 롤오버(rollover) 또는 이체(transfer)를 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 상속받은 IRA를 본인 소유로 간주하려면, 이 양식 대신 배우자 상속 IRA 재지정 양식(*Spousal Inherited IRA Redesignation Form*)을 작성하십시오.)

IRA에 정기 불입금, 롤오버/이체 불입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납입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금 기금 전통적 IRA 또는 Roth IRA(www.pensionfund.org)를 참조하십시오.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IRA에 정기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직 또는 전직 고용인의 배우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은퇴 플랜 또는 IRA에서만 자산을 IRA로 롤오버 또는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정 수익자로서 은퇴 플랜 또는 IRA의 자산으로 ‘상속 IRA’를 개설하려는 경우, 이 양식 대신 상속 IRA 가입 양식(*Inherited IRA Enrollment Form*)을 작성하십시오.

- 정자체로 작성하거나 타이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신청자 정보

성명 남성 기혼 여성 여성 _____
 성별 중립 목사 박사 (이름) (중간 이름) (성/가족 이름)

신청자는 다음에 해당합니다(하나만 선택): 현직 고용인 현직 고용인의 배우자 전직 고용인 전직 고용인의 배우자

사회보장번호/ITIN _____ 생년월일 _____ / _____ / _____ 성별: 남성 여성 논 바이너리

등록된 연락처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여기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택 주소 _____

시 _____ 주 _____ 국가 _____ 우편번호 _____ - _____

자택 전화번호 (_____) 직장 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시민권: 미국 기타: _____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가입을 위해 반드시 ITIN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현직 또는 전직 고용인의 배우자인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하십시오.

현직/전직 고용인의 이름 _____
 (이름) (중간 이름) (성/가족 이름)

사회보장번호/ITIN _____ 생년월일 _____ / _____ / _____

II. 현직/전직 고용인 고용 정보

현직/전직 고용주 _____
 (해당하는 경우 ‘독립 목회자’ 기재)

우편 주소 _____

시 _____ 도 _____ 국가 _____ 우편번호 _____ - _____

연락처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재직 기간 _____ / _____ / _____ ~ (하나만 선택) 현재 또는 _____ / _____ / _____

III. 불입 정보

본인은 전통적 IRA Roth IRA를 개설합니다. 개설하는 각각의 IRA에 대해 별도의 IRA 가입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해당하는 불입 유형에 표시하십시오(해당 항목 중 하나 이상 체크):

- 롤오버/이체**(전환conversion) 또는 재분류(recharacterization) 포함). DCRA에 따라 전통적 IRA를 Roth IRA로 이체(전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IRA 롤오버/이체 신청서(Application for Rollover/Transfer)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전직 고용인 및 전직 고용인의 배우자는 이 항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 불입금: 본인은 IRA에 세후 초기 불입금으로 \$_____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입합니다.

불입금은 다음 방식으로 납입합니다. 수표(은행을 통해 발행 또는 송금한 수표 등)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일회성 자동이체(ACH) 진행(아래 은행 정보 작성)

본인은 본 불입금을 과세 연도 20_____에 해당하도록 적용하며, 철회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불입금은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납입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간 연장 없이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일반적으로 4월 15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입금은 현재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향후 불입을 위해 IRA 불입 양식(IRA Contribution Form)을 작성하거나 아래에서 반복 불입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 반복 불입**. 본인은 행정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20_____ 이후부터 세후 불입금을 자동이체(ACH)방식으로 은행 계좌에서 본인의 IRA로 납입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래에 은행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반복 불입금 \$ 은(는) 매월 (하나만 선택) 1일 15일에 출금됩니다.

성 또는 반복 은행 출금을 선택한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 '무효(Void)' 처리된 수표를 첨부하십시오.

은행 이름 _____ 계좌 소유자 이름 _____

은행 주민 수표 _____ 전화번호 (_____) _____

중요: IRA를 개설하려면 최소 초기 불입금 \$100가 필요합니다. 정기 불입금은 해당 과세 연도의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해당 연도 말까지 만 50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Roth IRA에 한하여 고소득자의 정기 불입금 한도가 축소됩니다. 전통적 IRA에 정기 불입금을 납입하면 Roth IRA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IRA 소유자 자료집*(*IRA Owner Resource Book*)을 www.pensionfund.org에서 참조하여 이러한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수익자 지정

귀하가 사망할 경우 IRA에서 지급될 모든 연금 수익금을 받을 사람, 신탁, 법인을 지정하십시오. 신탁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의 이름, 주소, 설립일, 수탁자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우선 수익자와 예비 수익자를 각각 2명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려면 추가 수익자의 이름과 신원 정보를 기재한 별도의 서류에 서명하여 이를 첨부하십시오.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망 수익금은 귀하의 사망 당시 생존한 우선 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귀하의 사망 당시 생존한 우선 수익자가 없다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망 수익금은 귀하의 사망 당시 생존한 예비 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우선 수익자 또는 예비 수익자를 여러 명 지정했고 이들 중 한 명이 귀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수익자의 지분은 생존한 우선 수익자 또는 예비 수익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중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이 가입 양식에 기재한 모든 수익자가 귀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귀하의 수익금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 재산으로 지급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각 지정 수익자의 사회보장번호/ITIN과 현재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사망 시 이출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의자 모든 우선 수의자의 지분 합계는 총 100%가 되어야 합니다.	수의 비율
개인 또는 신탁 이름 _____ (이름, 중간 이름, 성/가족 이름)	_____ %
우편 주소 _____ (도로명, 시, 주, 우편번호)	
주 전화번호 (_____) _____	신청자/수탁자와의 관계 _____
사회보장번호/ITIN _____ - _____ - _____	생년월일 또는 신탁 설립일 _____ / _____ /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개인 또는 신탁 이름 _____ (이름, 중간 이름, 성/가족 이름)	_____ %
우편 주소 _____ (도로명, 시, 주, 우편번호)	

주 전화번호 ()	신청자/수탁자와의 관계		
사회보장번호/ITIN	생년월일 또는 신탁 설립일	/	/
이메일 주소			
예비 수익자 모든 우선 수익자가 귀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귀하의 사망 시 모든 수익금은 예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모든 예비 수익자의 지분 합계는 총 100%가 되어야 합니다.	수익 비율		
개인 또는 신탁 이름 (이름, 중간 이름, 성/가족 이름)	%		
우편 주소 (도로명, 시, 주, 우편번호)			
주 전화번호 ()	신청자/수탁자와의 관계		
사회보장번호/ITIN	생년월일 또는 신탁 설립일	/	/
이메일 주소			
개인 또는 신탁 이름 (이름, 중간 이름, 성/가족 이름)	%		
우편 주소 (도로명, 시, 주, 우편번호)			
주 전화번호 ()	신청자/수탁자와의 관계		
사회보장번호/ITIN	생년월일 또는 신탁 설립일	/	/
이메일 주소			

V. 신청자 확인 및 서명

본 IRA 가입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인증합니다.

- 본인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DCRA의 모든 약관을 준수하고, DCRA와 관련하여 연금 플랜에서 채택한 모든 행정 정책 및 절차를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IRA 소유자 자료집과 IRA 관련 기타 정보를 www.pensionfund.org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연금 기금에 IRA 소유자 자료집 사본을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IRA 공시문 및 IRA 재무 공시문을 수령하여 검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 신청서가 연금 기금에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으로 또는 직접 서면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불이익 없이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제II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DCRA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고용주의 현직 또는 전직 고용인이거나, 그러한 자격 있는 현직 또는 전직 고용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사회보장번호/ITIN을 포함하여 본 IRA 가입 양식에 기재한 정보가 정확함을 인증합니다. 본인은 본 양식에 기재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연금 기금에 적시에 통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본 가입 양식에 기재한 개인 정보를 연금 기금에서 DCRA에 관련한 가입 절차를 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함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본인이 납입하는 모든 불입금이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모든 불입금 또는 인출금과 관련한 세금상의 결과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IRA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추적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본인은 은행이 위에 기재한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는 데 동의하며 연금 기금이 해당 입금을 받는 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출금 및 입금은 자동이체(Automated Clearing House, ACH)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반복 불입을 선택한 경우, 본인은 본 동의서가 연금 기금에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함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본 양식의 제IV항에 기재한 개인 또는 단체를 IRA의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본인은 최신 수익자 지정 양식(Beneficiary Designation Form)을 직접 작성하여 서명하고 연금 기금에 제출하기 전까지 이 수익자 지정이 유효함을 이해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배우자 외 추가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본인은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 또는 부부재산제(marital property) 주(state)에서 거주하며, 해당 주법에 따라 IRA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러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증합니다. 또한 본인이 현재 미혼이라면 결혼하게 될 경우 배우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배우자 외 추가 수익자를 지정했을 때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공동재산제 및 부부재산제 주 배우자 동의서(Spousal Consent for Community and Marital Property States) 양식을 www.pensionfund.org에서 작성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필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본인은 이 양식에 첨부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가입자 포털에 업로드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연금 기금과 DCRA가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및 주 증권법에 따른 등록, 규제, 보고 요건에서 면제됨을 이해합니다. 가입자와 수익자는 DCRA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청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 _____ / _____

신청자가 배우자인 경우, 현직/전직 고용인도 본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현직/전직 고용인 서명 _____ 날짜 _____ / _____ / _____

양식과 수표 또는 은행 정보 제출처:

Pension Fund of the Christian Church

P.O. Box 639905, Cincinnati, OH 45263-9905

수신자 부담 전화: 1.866.495.7322 • 전화: 317.634.4504 • 팩스: 317.634.4071

이메일: pfcc1@pensionfund.org • 웹사이트: www.pensionfund.org

계좌번호 _____	가입 날짜 _____ / _____ / _____	초기 불입금 \$ _____
[이 칸은 연금 기금 전용이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교회 연금(사도 교회, “DCRA”)은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Code”) 제408(q)조에 따라 DCRA의 확정기여형 은퇴 계좌 일부로 간주 IRA 프로그램(deemed IRA program)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IRA 프로그램은 해당하는 경우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조 및 제408A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본 공시문은 연방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DCRA에 따른 적격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통적 IRA와 Roth IRA의 기본 규정을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본 공시문 마지막 부분에는 귀하가 검토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중요한 추가 문서를 제공합니다.

- IRA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DCRA 규정
- IRA 재무 공시문

본 공시문 및 첨부 문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최신 버전은 www.pensionfund.org/forms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A 철회

IRA는 개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RA는 귀하의 *IRA 가입 양식*(*IRA Enrollment Form*), *상속 IRA 가입 양식*(*Inherited IRA Enrollment Form*), *배우자 상속 IRA 재지정 양식*(*Spousal Inherited IRA Redesignation Form*)이 연금 기금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IRA가 개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RA 개설을 철회하려면 아래 주소로 연금 기금에 서면 통지서를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Pension Fund of the Christian Church
P.O. Box 639905
Cincinnati, OH 45263-9905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통지서는 IRA 개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적시에 철회 통지를 받은 경우, 연금 기금은 귀하가 납입한 불입금을 수익이나 수수료에 대한 조정 없이 환급합니다.

자격

A. 현직 고용인(employee) 및 배우자

귀하가 DCRA에 따른 적격 고용주(employer)에게 고용된 경우, 귀하와 배우자는 각각 IRA를 개설할 자격이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IRA를 개설하는 경우, 귀하와 배우자는 반드시 부부 공동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는 본인의 IRA에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배우자도 본인의 IRA에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귀하와 배우자가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연도에 해당하며, 귀하가 적격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귀하의 과세 대상 소득에는 급여, 봉급, 팁, 전문가 수수료, 상여금, 인적 용역에 따른 기타 소득뿐만 아니라, 자영업 소득, 비과세 전투 수당, 군인 특별 수당, 과세 대상 양육비 및 별거 생활 유지비가 포함됩니다. 대학원 또는 박사 후 과정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귀하에게 지급되어 총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또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는 부동산 소득 및 이익(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 파트너십 소득,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전투 수당 제외), 은퇴 플랜 지급금(403(b), 401(a) 또는 457 플랜 또는 IRA에서의 인출금), 기타 이연 소득 지급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과세 대상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납입한 IRA 불입금은 제외되며, 이에 따라 귀하에게 과세 대상 소득이 없더라도 IRA에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B. 전직 고용인 및 배우자

귀하와 고용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귀하와 배우자는 IRA에 정기 불입금을 납입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단, 다른 적격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배우자는 각각 자신의 IRA로 롤오버 불입금을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적격 고용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귀하와 배우자는 IRA를 개설하여 롤오버 불입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배우자는 각자 본인 명의의 은퇴 플랜 또는 IRA에서 본인의 IRA로만 롤오버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C. 생존 배우자

귀하가 현직 또는 전직 고용인인 경우, 귀하가 사망할 시 귀하의 생존 배우자는 귀하 사망 이전에 개설한 자신의 IRA로 롤오버 불입금을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에 해당 IRA에 정기 불입금을 납입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귀하의 생존 배우자는 귀하가 사망한 후 귀하의 IRA를 본인 명의로 재지정하거나 상속 IRA를 개설하여 DCRA에 따라 지정된 수의자로서 받을 권리가 있는 롤오버 불입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귀하’란, DCRA에 따라 IRA를 개설할 자격이 있는 고용인, 전직 고용인, 배우자, 생존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IRA 불입금 유형

A. 정기 불입금

현직 고용인 또는 현직 고용인의 배우자로서 자격이 있고,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IRA에 정기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기 불입금은 다음 항에서 설명하는 연간 한도에 따라 제한됩니다.

B. 롤오버 불입금

IRA에 정기 불입금을 납입할 자격이 없더라도, 롤오버 불입금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전통적 IRA로의 롤오버.** 귀하의 전통적 IRA 또는 적격 은퇴 플랜에 따라 보유한 세전 계좌의 자금을 귀하의 다른 전통적 IRA로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 적격 은퇴 플랜은 401(k) 플랜, 403(b) 플랜 또는 정부 457(b) 플랜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인출 자격이 있는 경우 세금 이연 은퇴 계좌(Tax-Deferred Retirement Account, TDRA) 잔액을 전통적 IRA로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 Roth IRA 또는 적격 은퇴 플랜에 따라 보유한 Roth 계좌의 자금을 전통적 IRA로 롤오버할 수는 없습니다.
2. **Roth IRA로의 롤오버.** 귀하의 Roth IRA 또는 위에서 정의한 적격 은퇴 플랜에 따라 보유한 Roth 계좌의 자금을 귀하의 다른 Roth IRA로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전통적 IRA 또는 적격 은퇴 플랜에 따라 보유한 세전 계좌의 자금을 귀하의 다른 Roth IRA로 롤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출 자격이 있는 경우 세금 이연 은퇴 계좌 잔액을 Roth IRA로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롤오버는 주로 ‘전환(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529 계좌의 미사용 자금을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

적격 은퇴 플랜에서의 롤오버는 귀하의 IRA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직접 롤오버”)와 귀하에게 먼저 지급한 후 귀하가 60일 이내에 IRA로 롤오버 거래를 완료하는 경우(“간접 롤오버”)가 있습니다. 다른 IRA에서 롤오버하는 경우 항상 귀하에게 먼저 지급되며, 귀하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귀하의 다른 IRA로 롤오버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면제 자격을 갖춘 경우, 60일 기한 이후에도 적격 은퇴 플랜 또는 IRA에서의 인출금을 귀하의 다른 IRA로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연 롤오버 불입금 인증서 양식(Certification for Late Rollover Contribution Form)’을 참조하십시오. 529 계좌에서는 Roth IRA로만 롤오버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탁자 간 직접 이체(direct trustee-to-trustee transfer)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 이체(Transfer) 불입금

귀하의 IRA 자금을 수탁자 간 이체 방식을 사용하여 귀하의 다른 IRA로 직접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귀하가 아닌, 자금을 수령하는 IRA의 수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적격 은퇴 플랜의 직접 롤오버와 유사합니다. 전통적 IRA에서 Roth IRA로 이체하는 경우, 이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최대 불입금

A. 정기 불입금 한도

2025년 한 해 동안 만 5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IRA에 정기 불입금으로 최대 \$7,000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만 50세 이상에 해당하거나 연말까지 만 50세가 되는 경우, IRA에 정기 불입금으로 최대 \$8,000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2025년 이후 생활비 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최대 불입금은 과세 대상 소득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공동 세금 신고를 하고 귀하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배우자의 과세 대상 소득보다 적은 경우, IRA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지정된 금액 한도 및 귀하와 배우자의 해당 연도 과세 대상 소득 합계에서 배우자의 해당 연도 IRA 불입금을 제외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모든 IRA에 대한 불입금은 합산하여 이 금액 한도 목적상 적용되므로, 다른 IRA에 불입금을 납입하면 Roth IRA 또는 전통적 IRA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1년 동안 529 계좌에서 Roth IRA로 툴오버한 불입금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단, 아래의 소득 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불입금은 전통적 IRA 또는 Roth IRA 이외의 다른 은퇴 플랜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B. Roth IRA에 대한 소득 기반 불입금 한도

귀하의 Roth IRA에 대한 최대 불입금은 수정된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과 세금 신고 상태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한도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 지위	조정 총소득	불입금 납입 한도
독신, 세대주, 부부 별도 신고 및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에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자	\$150,000 미만	전액 불입
	\$150,000 이상 \$165,000 미만	부분 불입
	\$165,000 이상	불입 없음
부부 공동 신고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격을 갖춘 자	\$236,000 미만	전액 불입
	\$236,000 이상 \$246,000 미만	부분 불입
	\$246,000 이상	불입 없음
부부 별도 신고 및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에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자	\$0	전액 불입
	\$0 초과 \$10,000 미만	부분 불입
	\$10,000 이상	불입 없음

이 조정 총소득 한도는 2025년 이후 생활비 조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입금 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간행물 590-A를 참조하십시오.

전통적 IRA에 대한 귀하의 최대 불입금은 수정된 조정 총소득 또는 세금 신고자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불입금 공제 가능 여부

Roth IRA에 대한 불입금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와 배우자가 모두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에도 고용주의 은퇴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통적 IRA에 납입한 불입금은 전액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은퇴 플랜은 확정기여형 플랜과 확정급여형 플랜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플랜 연도에 귀하의 계좌로 금액이 되불입되거나 배정되는 경우, 세금 이연 은퇴 계좌와 같은 확정기여형 플랜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연금 급여가 누적되는 경우, 연금 플랜과 같은 확정급여형 플랜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 또는 배우자 중 한쪽이라도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이든 고용주의 은퇴 플랜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소득 수준과 세금 신고자 지위에 따라 세금 공제를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고용주의 은퇴 플랜에 가입된 경우, 다음 표를 참고하십시오.

신고자 지위	조정 총소득	불입금 납입 한도
독신, 세대주, 부부 별도 신고 및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에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자	\$79,000 이하	전액 공제
	\$79,000 초과 \$89,000 미만	일부 공제
	\$89,000 이상	공제 없음
부부 공동 신고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격을 갖춘 자	\$126,000 이하	전액 공제
	\$126,000 초과 \$146,000 미만	일부 공제
	\$146,000 이상	공제 없음
부부 별도 신고 및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에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자	\$10,000 미만	일부 공제
	\$10,000 이상	공제 없음

- 만약 귀하가 고용주의 은퇴 플랜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귀하의 배우자가 고용주의 은퇴 플랜에 가입한 경우, 다음 표를 참고하십시오.

신고자 지위	조정 총소득	불입금 납입 한도
부부 별도 신고 및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에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자	금액 제한 없음	전액 공제
부부 공동 신고	\$236,000 이하	전액 공제
	\$236,000 초과 \$246,000 미만	일부 공제
	\$246,000 이상	공제 없음
부부 별도 신고 및 해당 연도 중 어느 기간에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자	\$10,000 미만	일부 공제
	\$10,000 이상	공제 없음

위 표는 2025년에 전통적 IRA에 납입한 정기 불입금에만 적용됩니다. 위 표의 수정된 조정 총소득 한도는 2025년 이후 생활비 조정에 따라 IRS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 연도에 사회보장 은퇴 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간행물 590-A를 참조하십시오.

IRA 불입금 납입 기한

귀하는 현재 연도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세금 신고 마감일(일반적으로 4월 15일)까지 언제든 IRA를 개설하여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는 종료되었지만 세금 신고 마감일 이전에 불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불입금을 납입할 과세 연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또는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더는 적격 고용주에게 고용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전 연도에 IRA를 개설하고 정기 불입금을 납입할 자격이 있었다면, 이전 연도에 대한 IRA를 개설하여 정기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 불입금은 반드시 이전 연도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세금 이연 수익

귀하의 IRA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이 누적되는 동안에는 연방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통적 IRA의 투자 수익 인출금은 인출 시점에 과세됩니다. Roth IRA의 투자 수익 인출금은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되며, 아래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과 불입금

귀하의 IRA에 대한 정기 불입금이 납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6%의 소비세(excise tax)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소비세는 초과분이 IRA에 남아 있는 연도마다 적용됩니다. 만약 초과분과 그에 대해 발생한 수익을 IRA 불입금 납입 마감일(해당 연도의 세금 신고 마감일, 일반적으로 4월 15일) 이전에 인출하면 소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RA 롤오버 제한

12개월 이내에 하나의 IRA에서 다른 IRA로 롤오버 가능한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단, 이 제한은 전통적 IRA를 Roth IRA로 전환하는 경우나, 한 IRA 수탁자에서 다른 IRA 수탁자에게 이체하는 수탁자 간 이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

전환이란 전통적 IRA에서 Roth IRA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은 롤오버 또는 수탁자 간 직접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환 금액 중 공제 가능한 불입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소득에 포함되어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가 부과됩니다. 단, 아래에 설명된 10% 조기 인출 패널티 세금(early distribution tax penalty)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IRA 간 롤오버에 적용되는 12개월당 1회 롤오버 제한은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분류

재분류란 동일 과세 연도 내에 한 IRA에 납입한 자금을 다른 IRA로 이동하여, 해당 불입금을 처음부터 두 번째 IRA에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분류는 수탁자 간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연장 기한을 포함한 세금 신고 마감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재분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전통적 IRA에 납입한 불입금을 수익 또는 손실을 조정하여 연장 기한을 포함한 세금 신고 마감일 이전에 Roth IRA로 이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Roth IRA에 납입한 정기 불입금을 수익 또는 손실을 조정하여 연장 기한을 포함한 세금 신고 마감일 이전에 전통적 IRA로 이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통적 IRA 또는 세전 계좌(pre-tax account)에서 Roth IRA로 롤오버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재분류할 수 없습니다.

529 계좌에서의 룰오버

귀하가 529 계좌의 수익자인 경우, 특정 조건 충족 시 수탁자 간 직접 이체 방식을 사용하여 529 계좌에서 Roth IRA로 룰오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29 플랜은 세금 혜택이 있는 고등 교육비 저축 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529 계좌에서의 인출금을 적격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출금에 대해 10% 벌금이 적용되며, 해당 투자 수익은 연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Roth IRA로 룰오버하는 경우 이러한 세금상의 결과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529 룰오버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 529 계좌는 최소 15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직전 5년 이내에 529 계좌에 불입된 금액(또는 그에 대한 수익)은 룰오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룰오버와 달리, 529에서 룰오버한 금액은 해당 과세 연도의 연간 납입 한도 산정 시 정기 불입금으로 간주됩니다. 단, 정기 불입금에 적용하는 소득 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평생 529 계좌에서 룰오버 할 수 있는 총금액은 \$35,000입니다.

529 룰오버는 수탁자 간 직접 이체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529 룰오버는 Roth IRA에서의 룰오버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IRA 인출금 과세

귀하는 언제든지 IRA에서 자금 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의 과세 여부는 IRA 유형, 인출 유형, 인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A. 전통적 IRA

귀하의 전통적 IRA에 공제 가능한 불입금만 납입한 경우, 인출 시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인출금을 다른 전통적 IRA나 적격 은퇴 플랜으로 룰오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하의 전통적 IRA에 공제 불가능한 불입금을 납입한 경우, 인출 시 공제 불가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익은 수령 시 과세합니다.

B. Roth IRA

귀하의 인출이 적격 인출인 경우, Roth IRA의 불입금과 수익은 모두 비과세로 인출됩니다. 적격 인출이란 Roth IRA에 최초 불입금을 납입한 연도의 1월 1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인출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

- 귀하가 만 59½세 이상이 된 이후 이루어진 인출
- 귀하가 장애 요건을 충족한 이후 이루어진 인출
- 귀하가 사망한 IRA 소유자의 수익자인 경우
- 최초 주택 구매를 위한 인출

귀하의 인출이 비적격 인출인 경우, 수익이 총소득에 포함됩니다(또한 다음에 설명할 조기 인출 패널티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서 일부만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연간 불입금이 인출되고, 이어서 전환 불입금, 수익 순서로 인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비적격 인출은 연간 불입금과 전환금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통적 IRA 또는 적격 은퇴 플랜에서 Roth IRA로 불입금을 전환하고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Roth IRA에서 금액을 인출할 경우, 전환 과정에서 총소득에 포함되었던 인출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10% 조기 인출 패널티 세금이 부과됩니다. 각 전환에 대해 5년의 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단, 아래에 규정된 조기 인출 패널티 세금의 예외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패널티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조기 인출 패널티 세금

귀하가 만 59½세 이전에 IRA에서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인출금에 대해 10%의 조기 인출 패널티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이 패널티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정 총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비환급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인출금이 실직 기간 중 의료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완전하고 영구적인 장애 상태인 경우
- 사망한 IRA 소유자의 수익자인 경우
- 연금형 지급액(annuity)으로 인출금을 수령하는 경우
- 인출금이 적격 고등 교육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인출금을 최초 주택 구매, 건축, 재건축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평생 한도 최대 \$10,000)
- 인출이 IRS 암류로 인한 경우
- 인출이 적격 예비군(qualified reservist)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
- 인출이 적격 출산 또는 입양에 해당하는 경우(출산 또는 입양당 최대 \$5,000)
- 인출이 적격 재난 복구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22,000)
- 불치 병 진단을 받은 경우
- 인출이 가정 폭력 피해자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10,000)
- 인출이 긴급 개인 경비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1,000)

조기 인출 패널티 세금은 (i) 다른 IRA 또는 적격 은퇴 플랜으로 롤오버한 금액, (ii) 전통적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한 금액, (iii) 수탁자 간 직접 이체 방식을 사용하여 전통적 IRA에서 다른 전통적 IRA로 또는 Roth IRA에서 다른 Roth IRA로 이체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격 자선 기부금(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S, QCD)

귀하가 만 70½세에 도달한 경우, IRA의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108,000(2025년 기준)까지 적격 자선 기부금 방식으로 적격 자선 단체에 기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선 기부금은 본래 소득으로 간주하는 인출금 한도까지만 허용됩니다. 적격 자선 기부금은 귀하의 IRA에서 적격 자선 단체로 직접 송금되어야 합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생 한 번에 한해 최대 \$54,000(2025년 기준) 한도 내에서 자선 잔여 연금형 신탁(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 CRAT)과 같은 분할 이익 기관(split-interest entity)으로의 인출을 IRA에서 적격 자선 단체로 직접 송금한 것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선 기부금 한도는 2025년 이후 생활비 인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격 자선 기부금은 연방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선 기부금에 대한 별도의 세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면제 한도(tax exclusion)는 (i) 귀하가 만 70½세에 도달하는 과세 연도 또는 이후의 모든 과세 연도에 불입한 공제 가능한 IRA 불입금 총액에서 (ii) 만 70½세 이후 공제 가능한 IRA 불입으로 인해 해당 과세 연도 이전의 모든 과세 연도에 대해 이미 감소된 적격 자선 기부금의 세금 면제 한도 금액을 뺀 금액만큼 감소합니다.

수수료 및 비용

연금 기금은 귀하의 IRA에 대해 특정 수수료 및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신 송금(wire transfer) 수수료, 다회 인출(multiple withdrawal) 수수료, 이혼 관련 이체(transfers incident to a divorce)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연금 기금은 연방 소득세 목적에 따라 귀하의 IRA 인출금에서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인출금에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추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전통적 IRA에서 다른 전통적 IRA로, 또는 Roth IRA에서 다른 Roth IRA로 이동하는 수탁자 간 이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가 원천징수될 경우, 귀하의 IRA 계좌 인출금에도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 원천징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 소득세 원천징수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최소 인출액(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

귀하는 생존 기간 동안 Roth IRA에서 필수 최소 인출액(RMD)을 인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전통적 IRA에서는 만 73세(1950년 12월 31일 이후, 196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또는 만 75세(1959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4월 1일까지 인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각 연도의 필수 최소 인출액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말 계좌 잔액을 IRS가 나이에 따라 정한 기대 수명 계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연금 기금은 귀하가 인출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인출 시작일 이전에 이를 안내합니다. 가능한 경우, 전통적 IRA 대신 귀하가 소유한 다른 IRA에서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필수 최소 인출액과 실제 인출액의 차액에 대해 상당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려면 이 규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귀하는 인출 플랜 또는 IRA의 필수 최소 인출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출액 일부를 IRA로 롤오버하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필수 최소 인출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인출분은 나머지 금액을 연금 기금이 운용하는 IRA로 롤오버하거나 이체하기 전에 귀하에게 먼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전통적 IRA에서 다른 전통적 IRA나 Roth IRA로 롤오버 또는 이체(전환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생존 기간에 Roth IRA에서 이루어지는 롤오버나 이체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관련 이체

연금 기금은 귀하의 IRA 전체 또는 일부를 미국 내국세법 제408(b)(6)조의 서면 이혼 또는 별거 명령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별도 IRA나 플랜으로 직접 이체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IRA 자금이 감소합니다.

사망 후 수익자에 대한 인출

A. 지정 수익자

귀하는 IRA 개설 시 IRA 가입 양식(또는 해당하는 경우 상속 IRA 가입 양식 또는 배우자 상속 IRA 재지정 양식)을 작성하거나, 추후 수익자 지정 양식(Beneficiary Designation Form)을 작성하여 연금 기금에 제출함으로써 IRA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망할 경우, 귀하의 IRA는 우선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우선 수익자가 귀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귀하의 IRA는 예비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 지정 양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예비 수익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수익자가 귀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귀하의 IRA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배우자가 없다면 귀하의 상속 재산으로 지급됩니다.

상속 IRA의 수익자는 IRA 소유자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 수익자를 IRA 소유자로 간주하도록 선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자격 구분은 수익자의 재정 및 은퇴 플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IRA는 파산 절차에서 수익자의 상속 재산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수익자는 상속 IRA와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재정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B. 배우자 수익자

귀하의 유일한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는 (i) 자신을 상속 IRA의 수익자로 간주하도록 선택하거나, (ii) 배우자 상속 IRA 재지정 양식(Spousal Inherited IRA Redesignation Form)을 작성하여 상속 IRA를 자신의 IRA로 처리하거나, (iii) 상속 IRA를 배우자 본인 명의의 다른 IRA로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자신을 상속 IRA의 수익자로 간주하도록 선택한 경우, 배우자는 귀하가 73세(1950년 12월 31일 이후, 196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 또는 75세(1959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가 되는 시점까지 인출을 연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기금은 인출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인출 시작일 이전에 배우자에게 이를 안내합니다.
- 배우자가 상속 IRA를 자신의 IRA로 처리하도록 배우자 상속 IRA 재지정 양식(Spousal Inherited IRA Redesignation Form)을 작성하거나, 상속 IRA를 배우자 본인 명의의 다른 IRA로 롤오버하는 경우, 해당 IRA는

배우자 소유의 IRA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IRA에서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전통적 IRA에서는 배우자가 73세(1950년 12월 31일 이후, 196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또는 75세(1959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가 되는 해의 다음 연도 4월 1일까지 인출을 시작할 의무가 없습니다.
- Roth IRA에서는 배우자의 생존 기간 동안 인출을 시작할 의무가 없습니다.

C. 비배우자(Non-Spouse) 수익자

비배우자 수익자의 경우, 상속 IRA를 비배우자 수익자 명의의 IRA로 롤오버할 수 없으며, 비배우자 수익자는 상속 IRA에서 수익자에게 요구하는 인출액을 반드시 수령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귀하는 연방 세금 신고서(서식 1040)에 IRA 불입금과 인출액을 정확히 보고하고, 전통적 IRA에 대한 모든 비공제 불입금(서식 8606)을 보고하며, 초과 불입금, 조기 인출액, 미지급 필수 최소 인출액에 따라 발생한 패널티 세금(서식 5329)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이 공시문의 목적은 귀하에게 IRA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IRA 소유자 자료집 또는 IRS 간행물 590-A, 개인 은퇴 연금 불입금(*Contributions to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IRA)*) 및 IRS 간행물 590-B, 개인 은퇴 연금 인출액(*Distributions from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IRA)*)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주 IRA(deemed IRA) 설정 규정은 개정에 따라 기독교 교회 연금 기금(사도 교회, “DCRA”)의 확정기여형 은퇴 계좌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아래에서 전부 명시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IX조

간주 IRA

제9.01항 채택일 및 효력 발생일. 제IX조는 본 조항의 규정과 상충하는 범위에 대해 기존 플랜의 모든 규정을 대체합니다.

제9.02항 간주 IRA의 자격 및 자금 조달.

(a) 고용인(Employee)은 본 플랜에 따라 간주 IRA를 개설하고, 자발적 고용인 불입금(Voluntary Employee Contributions) 및/또는 롤오버 불입금(Rollover Contributions)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b) 전직 고용인은 본 플랜에 따라 간주 IRA를 개설하고 롤오버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c) (a)항의 고용인과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배우자는 본 플랜에 따라 자신의 간주 IRA를 개설하고, 자발적 고용인 불입금 및/또는 롤오버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d) (b)항의 전직 고용인과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배우자는 본 플랜에 따라 자신의 간주 IRA를 개설하고 롤오버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e) 본 플랜은 각각의 간주 IRA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9.03항 간주 IRA 요건.

(a) 본 조항은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Code”) 제408(q)조 및 이에 따른 규정에서 요구하는 별도 신탁 요건을 충족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개설한 간주 IRA는 간주 IRA 신탁에서 보유하며,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조 및 408A조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각각 제9.08항과 제9.09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간주 IRA 수탁자를 지정하여 설립합니다. 간주 IRA 신탁 및 해당 개정 사항은 신탁에서 보유하는 자산을 본 플랜에 따라 유지하는 신탁으로 채택되며, 신탁에 간주 IRA 자산이 존재하는 한, 간주 IRA 신탁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b) 재무부 규칙(Treasury Regulation) 제1.408-2(e)(6)(v)조에 따라, 연금 기금은 간주 IRA 수탁자가 재무부 규칙 제1.408-2(e)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양식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신고서 제출 또는 명세서 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IRS 국세청장(Commissioner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이 통지하는 대로 새로운 간주 IRA 수탁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9.04항 보고 의무. 간주 IRA 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 플랜에 따라 개설하여 유지하는 모든 간주 IRA에 대해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i)조의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05항 간주 IRA 절차. 본 제IX조,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조, 제408A조, 해당 재무부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플랜의 모든 절차 규정은 간주 IRA에 적용됩니다.

제9.06항 간주 IRA 잔액 평가(Valuation). 간주 IRA에서 가입자의 계좌 잔액은 재무부 규칙 제1.408-8조 Q&A-7 및 Q&A-8에 따라 미납 롤오버(rollover), 이체(transfer), 재분류(recharacterization) 금액을 포함합니다.

제9.07항 간주 IRA 수익자. 본 제IX조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가입자가 지정한 간주 IRA 수익자가 사망하여 원래라면 받았어야 할 간주 IRA 잔액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수익자가 받을 예정이었던 간주 IRA의 미지급 잔액은 수익자가 생존 기간에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러한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익자의 상속 재산으로 지급합니다.

제9.08항 간주 전통적 IRA 요건. 간주 IRA 선택은 간주 전통적 IRA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배타적 수익. 간주 전통적 IRA 계좌는 가입자 또는 그 수익자에게 배타적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됩니다.

(b) 연간 최대 불입금.

(1) 자발적 고용인 불입금은 간주 전통적 IRA에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입금 총액은 미국 내국세입법 제219(b)(1)조 및 제219(b)(5)(A)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219(g)조는 고려하지 않으며, 생활비 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에 따라 인상된 금액입니다.

(2) 단, 플랜 연도 종료 시점에 만 오십(50) 세 이상이 되는 가입자는 미국 내국세입법 제219(b)(1)조 및 제219(b)(5)(B)조에 따른 한도까지 자발적 고용인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219(g)조는 고려하지 않으며, 생활비 조정에 따라 인상된 금액입니다.

(3) 이러한 불입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는 미국 내국세입법 제402(c)조, 제402(e)(6)조, 제403(a)(4)조, 제403(b)(8)조, 제403(b)(10)조, 제408(d)(3)조, 제457(e)(16)조에서 설명하는 이전 불입금,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k)조에서 설명하는 고용주의 단순 고용인 연금 플랜(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불입금,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A(d)(6)조에서 설명하는 재분류된 불입금이 있습니다.

(c) 수집품(Collectible). 간주 IRA 선택 자금 중 간주 전통적 IRA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m)조에서 규정하는 수집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단,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m)(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며, 이는 각 주 법률에 따라 발행한 특정 금, 은, 백금 주화 및 특정 금괴를 포함합니다.

(d) 생명보험 계약. 간주 IRA 선택 자금 중 간주 전통적 IRA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명보험 계약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e) 고용인용 저축 인센티브 매칭 플랜(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SIMPLE) IRA 불입금.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p)조에 따라, 어떤 고용주가 개설한 SIMPLE IRA 플랜에도 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고용주가 해당 SIMPLE IRA 플랜에 따라 납입한 불입금에 해당하는 자금은 해당 가입자 개인이 처음으로 그 고용주의 SIMPLE IRA 플랜에 참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SIMPLE IRA, 즉 SIMPLE IRA 플랜과 연계된 전통적 IRA에서 이체하거나 률오버할 수 없습니다.

(f) 가입자의 생존 기간 필수 최소 인출액.

(1) 일반 규정. 간주 전통적 IRA의 어떠한 규정과 상반되더라도, 가입자의 간주 전통적 IRA 계좌 이자 인출은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a)(6)조의 요건, 이에 따른 규정, 본 문서에 참조로 포함된 해당 규정, 2019년 전 공동체 은퇴 증진법(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SECURE)과 2022년 SECURE 2.0에 따른 변경 사항 및 이에 따른 모든 규제 지침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주 전통적 IRA의 필수 최소 인출액은 해당 가입자 개인의 다른 IRA 계좌에서 재무부 규칙 제1.408-8조 Q&A-9에 따라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2) 필수 인출 개시일(Required Beginning Date). 간주 전통적 IRA 계좌의 전체 잔액은 해당 계좌가 가입자의 수익을 위해 유지되는 경우, 가입자가 미국 내국세입법 제401(a)(9)(C)(v)조에서 규정하는 적용 연령에 도달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일 이전에 인출을 시작해야 하며, 인출은 (a) 가입자 본인 또는 가입자와 지정 수익자의 생존 기간 또는 (b) 가입자의 기대 수명 또는 가입자와 지정 수익자 중 공동 및

최종 생존자의 기대 수명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가입자가 미국 내국세입법 제401(a)(9)(C)(v)조에서 규정하는 적용 연령에 도달한 연도의 필수 최소 인출액은 다음 해 4월 1일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연도의 필수 최소 인출액은 해당 연도 말까지 인출되어야 합니다.

(g) 가입자 사망 시 필수 최소 인출액. 내국세입법 제401(a)(9)조에 따른 규정 또는 기타 지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다음 인출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지정 수익자가 없는 경우. 가입자가 간주 전통적 IRA 계좌 인출을 시작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계좌에서 지정 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지급될 금액은 가입자 사망 오(5) 주기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출되어야 합니다. 가입자가 간주 전통적 IRA 계좌 인출을 시작한 후에 사망한 경우, 계좌에서 지정 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지급될 잔액은 가입자 사망 당시 적용되던 인출 주기와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인출되어야 합니다.

(2) 지정 수익자의 경우. 가입자가 간주 전통적 IRA 계좌 인출을 시작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적격 지정 수익자가 아닌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될 금액은 가입자 사망 십(10) 주기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출되어야 합니다. 가입자가 간주 전통적 IRA 계좌 인출을 시작한 후에 사망한 경우, 적격 지정 수익자가 아닌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될 계좌 잔액은 가입자 사망 당시 적용되던 인출 주기와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인출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잔액은 가입자 사망 십(10) 주기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전액 인출되어야 합니다.

(3) 적격 지정 수익자의 경우. 가입자가 간주 전통적 IRA 계좌 인출을 시작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적격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될 금액은 가입자 사망 다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시작해야 하며, 적격 지정 수익자의 생존 기간 또는 적격 지정 수익자의 기대 수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걸쳐 인출되어야 합니다. 적격 지정 수익자가 생존 배우자인 경우, 가입자가 내국세입법 제401(a)(9)(C)(v)조에서 규정하는 적용 연령에 도달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는 인출을 시작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입자가 간주 전통적 IRA 계좌 인출을 시작한 후에 사망한 경우, 계좌에서 적격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될 잔액은 가입자 사망 당시 적용되던 인출 주기와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인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격 지정 수익자가 사망하거나, 가입자의 적격 지정 수익자가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만 이십일(21) 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의 간주 전통적 IRA 계좌 전액이 아직 위 조항에 따라 인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은 적격 지정 수익자 사망 십(10) 주기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또는 자녀가 만 삼십일(31) 세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출되어야 합니다.

(h) 몰수 불가능. 가입자는 자신의 간주 전통적 IRA 계좌 잔액에 대해 언제나 몰수 불가능한 권리를 가집니다.

(i) 보고. 간주 IRA 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간주 전통적 IRA 계좌의 현황 및 최소 필수 인출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국세청장(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j) 배우자 규정.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q)조 및 그 하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일한 지정 수익자가 해당 가입자 개인의 생존 배우자인 경우, 그 배우자는 해당 간주 전통적 IRA를 자신의 IRA로 간주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배우자가 간주 전통적 IRA에 불입금을 납입하거나, 수익자로서 의무에 따라 인출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선택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k) 해석. 다른 규정이 추가되거나 통합되더라도, 본 플랜에 따라 개설된 각 간주 전통적 IRA에 대해서는 본 제9.08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또한, 본 플랜의 다른 규정이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a)(6)조, 재무부 규칙, 기타 안내서와 상충하는 경우, 간주 전통적 IRA와 관련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제9.09항 간주 Roth IRA 요건. 간주 Roth IRA 선택은 간주 Roth IRA에 대해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배타적 수익. 간주 Roth IRA 계좌는 가입자 또는 그 수익자에게 배타적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됩니다.

(b) 연간 최대 불입금.

(1) 최대 허용 금액. 적격 롤오버 불입금 또는 재분류의 경우(아래 제(5)항에 정의)를 제외하고, 자발적 고용인 불입금은 현금으로 납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 연도 동안 가입자의 모든 Roth IRA에 대한 이러한 불입금의 총액은 해당 과세 연도의 적용 금액(아래 제(2)항에 정의) 또는 가입자 소득(아래 제(7)항에 정의)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문장에서 언급한, 적용 금액 또는 가입자의 소득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불입금을 ‘정기 불입금’이라고 합니다. ‘적격 롤오버 불입금’이란,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d)(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롤오버 불입금을 말합니다. 단, 롤오버 불입금이 전통적 IRA로부터 롤오버되는 경우에는 제408(d)(3)(B)조의 연 일(1) 회 이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격 롤오버 불입금에는 미국 내국세입법 제402A조에서 명시하는 지정 Roth 계정에서의 이전도 포함됩니다. 자발적 고용인 불입금은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적용 금액. 적용 금액은 아래 제(i)항 또는 제(ii)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i) 가입자의 적용 금액은 미국 내국세입법 제219(b)(1)(A)조 및 제219(b)(5)(A)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219(g)조는 고려하지 않으며, 생활비 조정에 따라 인상된 금액입니다.

(ii) 단, 플랜 연도 종료 시점에 만 오십(50) 세 이상이 되는 가입자의 적용 금액은 미국 내국세입법 제219(b)(1)(A)조 및 제219(b)(5)(B)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219(g)조는 고려하지 않으며, 생활비 조정에 따라 인상된 금액입니다.

(3) 정기 불입금 한도. 아래 제(i)항 및/또는 제(ii)항이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의 모든 Roth IRA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정기 불입금은 제(i)항 또는 제(ii)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i)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A(c)(3)조에 따라, 최대 정기 불입금은 수정된 조정 총소득(‘수정된 AGI’, 아래 제(6)항에 정의) 수준에 따라 일정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생활비 조정에 따라 최대한도가 인상됩니다.

(ii) 가입자가 과세 대상 연도에 Roth IRA와 전통적 IRA 모두에 정기 불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가입자의 모든 Roth IRA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정기 불입금은 해당 과세 연도에 가입자의 전통적 IRA에 납입한 정기 불입금 액수만큼 감소합니다.

(4) SIMPLE IRA 한도.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p)조에 따라, 어떤 고용주가 개설한 SIMPLE IRA 플랜에도 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고용주가 해당 SIMPLE IRA 플랜에 따라 납입한 불입금에 해당하는 자금은 해당 개인이 처음으로 그 고용주의 SIMPLE IRA 플랜에 참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SIMPLE IRA, 즉 SIMPLE IRA 플랜과 연계된 IRA에서 이체하거나 롤오버할 수 없습니다.

(5) 재분류. 전통적 IRA에 대한 정기 불입금은 재무부 규칙 제1.408A-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제(3)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 간주 Roth IRA에 대한 정기 불입금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6) 수정된 조정 총소득. 위 제(3)항의 목적상, 가입자의 해당 과세 연도의 수정된 조정 총소득은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A(c)(3)(C)(i)조에 따라 정의되며, 전통적 IRA에서의 롤오버('전환')로 인해 조정 총소득에 포함된 금액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소득. 위 제(1)항의 목적상, '소득'이란 실제로 제공한 인적 용역에 대해 발생하거나 지급받은 급여, 봉급, 전문가 수수료 또는 기타 금액(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익률에 따른 근로소득, 보험료 수수료, 팁, 보너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또한 미국 내국세입법 제401(c)(2)조에서 정의한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자영업자가 자영업자 은퇴 플랜에 납입한 불입금의 공제액만큼 차감). 이 정의의 목적상, 미국 내국세입법 제401(c)(2)조는 제1402조의 목적상 무역 또는 사업으로 정의되는 범위에 제1402(c)(6)조에서 규정하는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에는 자산에 대해 발생하거나 받은 수익 또는 이익(이자, 배당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연금형 지급액(annuity), 또는 이연 소득으로 수령한 금액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라는 용어는 미국 내국세입법 제71조에 따라 제71(b)(2)조 제(A)호에 명시된 이혼 또는 별거 관련 문서와 관련하여 개인의 총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중 더 큰 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배우자의 소득은 배우자가 Roth IRA 또는 전통적 IRA에 공제 가능한 불입금을 납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c) 수집품. 간주 IRA 신탁 자금 중 간주 Roth IRA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m)조에서 규정하는 수집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단,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m)(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며, 이는 각 주 법률에 따라 발행한 특정 금, 은, 백금 주화 및 특정 금괴를 포함합니다.

(d) 생명보험 계약. 간주 IRA 신탁 자금 중 간주 Roth IRA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명보험 계약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e) 사망 전 인출액. 간주 Roth IRA 계좌는 원래 해당 가입자가 수익을 받도록 개설된 계좌로,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인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f) 가입자 사망 시 필수 최소 인출액. 간주 Roth IRA의 어떠한 규정과 상반되더라도, 가입자의 간주 Roth IRA 계좌 이자 인출은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a)(6)조의 요건,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A(c)(5)조에 따른 수정된 사항, 이에 따른 규정, 본 문서에 참조로 포함된 해당 규정, 2019년 전 공동체 은퇴 증진법(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SECURE)과 2022년 SECURE 2.0에 따른 변경 사항 및 이에 따른 모든 규제 지침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국세입법 제401(a)(9)조에 따른 규정 또는 기타 지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다음 인출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지정 수익자가 없는 경우. 간주 Roth IRA 계좌에서 지정 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지급될 금액은 가입자 사망 오(5)주기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출되어야 합니다.

(2) 지정 수익자의 경우. 간주 Roth IRA 계좌에서 적격 지정 수익자가 아닌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될 금액은 가입자 사망 십(10)주기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출되어야 합니다.

(3) 적격 지정 수익자의 경우. 간주 Roth IRA 계좌에서 적격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될 금액은 가입자 사망 다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시작해야 하며, 적격 지정 수익자의 생존 기간 또는 적격 지정 수익자의 기대 수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인출되어야 합니다. 적격 지정 수익자가 가입자의 생존 배우자인 경우, 가입자 사망 연도 다음 연도의 12월 31일 또는 가입자가 미국 내국세입법 제401(a)(9)(C)(v)조에서 규정하는 적용 연령에 도달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는 지급을 시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격 지정 수익자가 사망하거나, 가입자의 적격 지정 수익자가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만 이십일(21)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의 간주 Roth IRA 계좌 전액이 아직 위 조항에 따라 인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은 적격 지정 수익자 사망 십(10)주기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또는 자녀가 만 삼십일(31)세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출되어야 합니다.

(g) 몰수 불가능. 가입자는 자신의 간주 Roth IRA 계좌 잔액에 대해 언제나 몰수 불가능한 권리를 가집니다.

(h) 보고. 간주 IRA 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간주 Roth IRA 계좌의 현황 및 최소 필수 인출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i) 해석. 다른 규정이 추가되거나 통합되더라도, 본 플랜에 따라 개설된 각 간주 Roth IRA에 대해서는 본 제9.09항과 본 문장의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A조, 재무부 규칙, 기타 안내서와 상충하는 모든 추가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j) 간주 Roth IRA로의 롤오버.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생존 배우자인 수익자가 해당 가입자 계좌의 적격 롤오버 인출액을 다른 적격 은퇴 플랜으로 전액 또는 일부 롤오버할 수 있는 인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생존 배우자인 수익자는 적격 롤오버 인출액 중 간주 Roth IRA 불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자신의 간주 Roth IRA 내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로 직접 롤오버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생존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k) 529 계좌에서 이체. 가입자가 미국 내국세입법 제529조에 따른 적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529 계좌')의 지정 수익자인 경우, 미국 내국세입법 제529(c)(3)(E)조 및 제408A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529 계좌로부터 자신의 간주 Roth IRA 계좌로 인출액을 수탁자 간 직접 이체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1) 529 계좌는 인출일 기준으로 이전 십오(15) 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2) 인출액은 인출일 기준으로 이전 오(5) 년 동안 529 계좌에 납부한 총액(및 그 수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가입자의 529 계좌에서 모든 Roth IRA(간주 Roth IRA 포함)로 이체하는 연간 총 인출액은 해당 과세 연도에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미국 내국세입법 제408A(c)(2)조의 연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 한도는 해당 과세 연도 동안 가입자를 위해 유지되는 모든 개인 은퇴 플랜에 납부한 총 불입금만큼 차감됩니다).

(4) 가입자의 생존 기간에 529 계좌에서 모든 Roth IRA(가입자의 간주 Roth IRA 포함)로 이체되는 총 인출액은 삼만오천 달러(\$3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 기금은 귀하가 IRA 계좌에 보유한 자금을 투자합니다. 귀하의 IRA에는 연금 기금이 지정한 기준 금리에 따른 크레딧과 연금 기금 이사회가 수시로 지정하는 우수 경험 크레딧(Good Experience Credit)이 적용됩니다.

기준 금리는 각 분기 시작 전에 연금 기금에서 결정합니다. 기준 금리는 각 분기 말에 크레딧으로 적용하며 일 단위로 복리 계산합니다. 연금 기금은 기준 금리를 결정할 때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및 중기 고정 소득 투자 수익률 평균을 기반으로 한 지수를 사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책상 기준 금리는 3.0%에서 6.0%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우수 경험 크레딧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크레딧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의 IRA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그해 말 이전에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 제시된 계좌 가치는 표시된 시점에 자금을 인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귀하의 IRA에서 이용 가능한 예상 잔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예상액은 다음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 표 I의 경우: 매년 1월 1일에 \$1,000를 입금합니다.
- 표 II의 경우: 첫해 1월 1일에 \$1,000를 일회성 롤오버 불입금으로 납입합니다.
- 첫해 1월 1일 기준 귀하의 나이는 만 40세입니다.
- 각 연도의 평균 기준 금리는 3%입니다.
- 기준 금리는 일 단위로 복리 계산됩니다.

우수 경험 크레딧은 예상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표시된 계좌 잔액은 단지 예상액일 뿐이며, 여러 가정을 기반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는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 투자 상품의 이자율, 수익, 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 I: 불입금 예상액

IRA 프로그램 가입 기간	IRA 총 누적 금액	조기 인출 벌금을 제외한 사용 가능 금액	귀하의 나이	IRA 총 누적 금액
1년	\$1,030.45	\$927.41	60	\$29,694.26
2년	\$2,092.28	\$1,883.05	65	\$39,975.37
3년	\$3,186.46	\$2,867.81	70	\$51,920.24
4년	\$4,313.95	\$3,882.56		
5년	\$5,475.78	\$4,928.20		

표 II: 롤오버 예상액

IRA 프로그램 가입 기간	IRA 총 누적 금액	조기 인출 벌금을 제외한 사용 가능 금액	귀하의 연말 기준 나이	IRA 총 누적 금액
1년	\$1,030.45	\$927.41	60	\$1,821.96
2년	\$1,061.83	\$955.65	65	\$2,116.77
3년	\$1,094.16	\$984.74	70	\$2,459.28
4년	\$1,127.48	\$1,014.73		
5년	\$1,161.81	\$1,045.63		